



제 439회 국회 (정 기 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관리·운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21052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입법배경	4
가.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배경	4
나. 추진경과	6
2. 주요내용	8
가. 법률안의 주요내용	8
나. 국내외 유사 재정제도 현황	13
3. 총괄적 검토	18
가. 추가·초과세수를 활용한 기금 설치의 적정성	18
나. 기금재원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안정화 기능의 실효성	21
다. 기존 재정체계와의 중복 가능성	25
라.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29
마. 다부처 기금 설치가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체계에 미치는 영향	32

4. 조문별 검토	36
가. 미래대응투자의 정의 및 기금 재원 산정기준의 적정성 (안 제2조)	36
나. 총괄계정의 기능 및 계정·회계·기금 간 자금거래의 적정성 (안 제5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3
다. 청년계정 및 성장동력계정의 지원범위와 사업선정 기준 (안 제6조·제7조)	51
라. 지방계정의 기능 및 기존 지역재정체계와의 관계 (안 제8조, 제17조·제18조)	57
마.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용도 및 기존 교육재정과의 관계 (안 제9조)	64
바.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안 제13조)	71
사.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 절차(안 제14조)	73
아.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기능 및 구성(안 제15조)	77
자. 미래대응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안 제16조)	83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 출 일 : 2026. 9. 3.

다. 회 부 일 : 2026. 9. 4.

II.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커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운용 장치가 필요하고, 인공지능(AI) 혁신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기 호전 등으로 특정 회계연도에 국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 재원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각종 전략 분야에 투자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변동 등으로 발생한 장기 세입 추세치를 상회하는 조세 수입과 해당 연도에 일시적으로 세입예산을 상회하는 초과 조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기능을 갖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안 제1조, 제3조 및 제13조제1항)

국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

나. 기금의 계정구분(안 제4조)

미래대응기금의 계정을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총괄계정과 미래대응투자 목적의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으로 구분함.

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며,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인재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13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기금사용계획 제출(안 제14조)

미래대응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안 제15조)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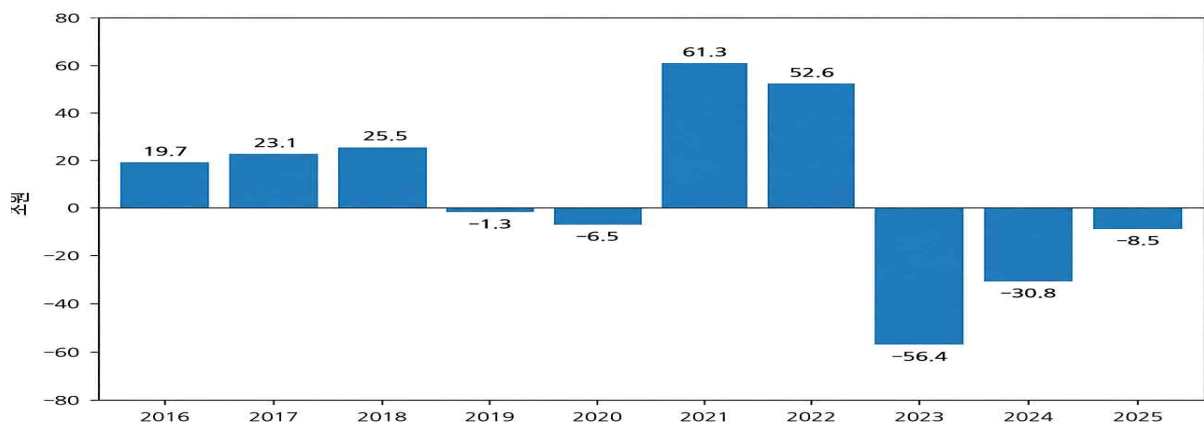
IV. 검토의견

1. 입법배경

가.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배경

최근 국세수입은 경기 및 기업실적 등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음.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1.3조원, 52.6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4조원, 30.8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대규모 세수차이는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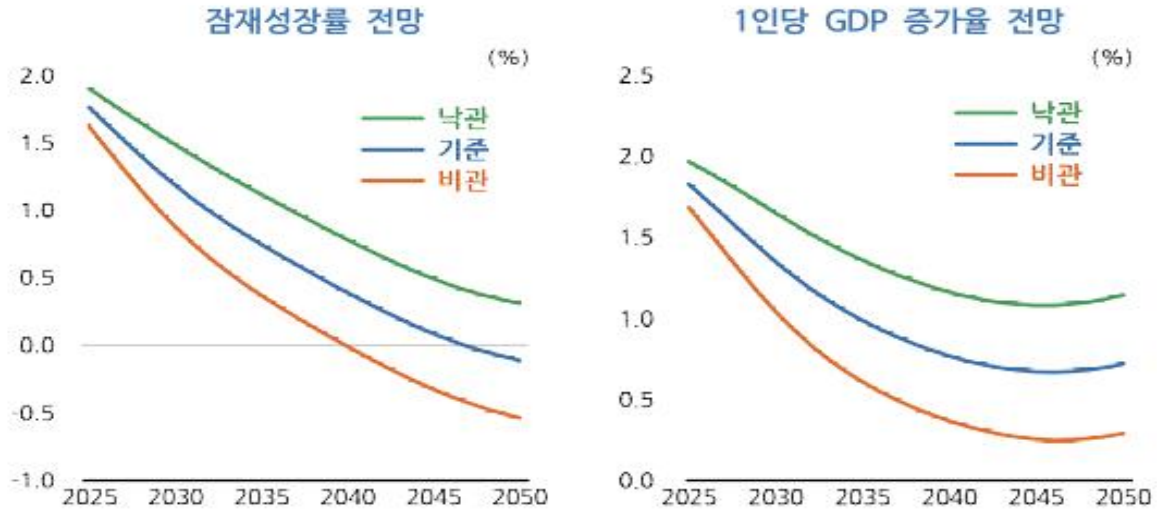
[국세수입 초과세수 및 세수결손 발생 현황]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2026, p.66.

한편,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최근 KDI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1%대 후반에서 2030년 1%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중반 0% 수준에 근접한 뒤 2040년대 후반부터 역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¹⁾

[잠재성장률 및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8.

또한,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인공지능·양자·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을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분야로 보고 선제적·집중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 390억 달러는 반도체 시설·장비 투자 인센티브에 투입하고 있음.²⁾ 중국 역시 「중공 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2026-2030)」에서 집적회로·바이오의약·항공우주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양자기술·바이오제조·체화지능·6G 등 미래산업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위험분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³⁾.

1) 한국개발연구원(KDI),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 5. 8.

2)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CHIPS FOR AMERICA", <https://www.nist.gov/chips> (최종 검색일: 2026. 9. 11.).

3) 문지영·조고운,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8 No.44, 2025.11.28., pp.4~6.

이와 같이 최근에는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재정 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잠재성장률 하락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 확대에 대응하여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투자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나. 추진경과

최근 반도체 산업 호조 등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과세수의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정부는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기존 방식 외에도 초과세수를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여 세수변동에 대응하거나 미래투자에 활용하는 방안,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였음.⁴⁾

이후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방안을 공식화하고,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여력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여 재정안정화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투자공사(KIC)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⁵⁾.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여 추가세수·초과세수 및 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세수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과 청년, 성장동력, 지역, 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미래대응투자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설계하였음.

4) 연합뉴스, 「초과세수 활용법 새판 짜다…기금·펀드 ‘미래투자’ 다각도 검토」, 2026. 6. 14.

5)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2026. 7. 14.

이후 정부는 2026년 8월 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9월에는 6개 관련 법률안과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7개 안건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또한 이들 6개 법률안 모두에 대하여 2027년도 예산안의 세입과 연계된다는 이유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음.

[미래대응기금 관련 정부제출 안건 현황]

구 분	주요내용	소관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2221052)	미래대응기금 설치, 총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계정 구성, 기금의 재원·용도 및 관리·운용체계 규정	재경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6)	초과세수·세계잉여금의 미래기금 전출,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 절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허용범위 등	재경위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21033)	미래대응기금 신설 전제로 편성	재경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47)	미래대응기금 재원조성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조정	행안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체계 조정	교육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체계 변경을 반영한 특별회계 재원 조정	교육위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체계 변경을 반영한 특별회계 재원 조정	교육위

2.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첫째,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총괄계정과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 등 5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총괄계정은 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 등을 적립하고 다른 회계·기금 및 기금 내 계정과의 전출입·예수·예탁 등을 수행하는 등 기금 전체의 재정안정화 및 자금조정 기능을 담당하며, 나머지 4개 사업계정은 청년, 성장동력, 지역, 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미래대응투자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둘째,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규정하고 있음.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의 내국세 세입예산액이 최근 내국세 세입실적을 기초로 산정한 내국세 추세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 중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총괄계정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 등에 따른 내국세 세입전망액이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 밖에도 세계잉여금, 다른 회계·기금 및 기금 내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예탁금

원리금 및 기금운용수익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셋째, 총괄계정은 다른 회계·기금 및 기금 내 계정에 대한 전출·예탁,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금 관리·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업계정별로는 청년계정에서 청년의 일자리·창업·주거·자산형성·혼인·출산·생활·문화 등을 지원하고, 성장동력계정에서는 인공지능·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계정은 지역산업 인프라·정주여건 개선·농어촌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 보육·교육, 고등·평생 교육, 첨단산업 인재양성 및 우수인재 유치·유출 방지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넷째, 다른 특별회계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은 개별 설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탁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예탁금의 이자율은 국채·공공채권의 시장금리, 각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및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조기상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다섯째,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분야의 다음 연도 기금사용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신탁, 유가증권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의 전문성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여섯째,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결산, 예수·예탁 조건 및 자산운용지침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일곱째, 지방계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보조금의 반환·사용 등에 관한 일부 특례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설치목적 (제1조·제3조)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성 완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및 미래대응투자를 통한 잠재성장을 제고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정의 (제2조)	미래대응투자, 내국세 세입 및 추세치, 추가세수·초과세수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주요 용어 정의
계정구조 (제4조~제9조)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으로 구분
주요자원 (제5조·제9조)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다른 회계·기금 및 계정으로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주요용도 (제5조~제9조)	총괄계정은 다른 회계·기금 및 계정 간 자금조정·재정안정화 등에 활용하고, 사업계정은 청년지원, 성장동력 확충, 지역발전, 교육·인재양성 등에 활용
타 회계·기금과의 자금거래 (제10조~제12조)	다른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계정에 예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기간·이자율 및 상환절차 등을 규정
관리·운용 (제13조~제16조)	기획예산처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분야 기금사업을 수행하며, 기금사용계획 제출·운용심의회·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계정 특례 (제17조~제18조)	지방계정 사업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재이월을 허용하고,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한편, 정부가 제정안과 함께 제출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7년에는 총 162조 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할 계획임. 이 중 45조 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의 사업비로 지출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규모 축소에 활용하며, 나머지 약 104조 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임.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계획]

구분	규모	주요내용
수입	162.3조원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하는 추가세수 적립
사업비	45.4조원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지원
국채 신규발행 축소	12.5조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
여유자금	104.4조원 + α *	여유자금 운용 및 향후 정책수요 대응 * '26.9월 세입재추계로 내국세 수입이 '26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보다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초과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적립 가능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규모]

계정	규모	주요사업
청년계정	13.3조원	청년 첫취업 지원, 창업사업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청년미래적금, 혼인·출산·양육 지원 등
성장동력계정	14.2조원	프론티어급 AI 개발, 제조 AI·AIDC 생태계,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세대 발사체, 공급망안정화 등
지방계정	15.3조원 (사업비 10.3조원, 여유자금 5조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행정통합 지원, 농어촌 및 지역산업 지원 등
교육·인재계정	10.1조원 (사업비 7.6조원, 여유자금 2.5조원)	4대 과기원, 이공계 장학금, AI중심대학, 미래인재성장자금, 지방국립대 장학금 등
총괄계정	109.4조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5조원, 여유자금 96.9조원+ α

[2027년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주요사업]

계	◇ 4대 사업계정: 52.9조원(사업지출 45.4조원, 여유자금 7.5조원) ◇ 총괄계정: 109.4조원(국채신규발행 축소 12.5조원 여유자금 96.9조원) ※ 여유자금 운영 등: 104.4조원(총괄 96.9, 지방 5.0, 교육인재 2.5조원)
청년 계정 (13.3조원)	① (일자리·창업) 노동부청년첫취업지원(신규0.4조원), 중기부창업사업화(1.0조원) ② (주거안정) 국토부보편형 공공임대주택(신규1.4조원) ③ (자산형성) 금융위청년미래적금(1.7조원), 금융위청년기회자금(신규0.1조원) ④ (혼인·출산) 복지부,성평등부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2.9→3.8조원) ⑤ (생활·문화) 문체부청년문화예술패스(361억원→0.8조원)
성장동력 계정 (14.2조원)	① (AI) 과기부프론티어급 AI 개발(신규4.7조원) 과기부모두의 AI(신규0.25조원) 산업부제조암묵지 R&D(신규0.3조원), 과기부·산업부AIDC 생태계(신규0.3조원) ② (전략기술) 국토부지울주행실증도시(0.1→0.8조원), 우주청차세대 발사체(0.1→0.3조원) ③ (지분투자) 재경부공급망안정화(0.2조원), 금융위PF사업장 정상화 펀드(신규0.5조원) ④ (전력·용수) 기후부한전출자(신규0.5조원), 기후부서남권 반도체산단 용수(신규0.1조원)
지방 계정 (15.3조원)	① (일반재원) 행안부지방미래성장지원금(신규3.5조원), 행안부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신규1.5조원) ② (농어촌) 농식품부농업 AX실증(신규0.02조원), 농·수산물 유통개선(신규0.01조원) ③ (행정통합) 행안부전남·광주 통합지원금(일반2.85조원, 사무이관0.65조원) ④ (기타) 문체부지방 호텔 건립 지원(신규0.15조원) ※ (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 계정 (10.1조원)	① (초격차 인재) 과기부4대 과기원(0.7→0.8조원), 과기부이공계 장학금(0.1→0.2조원), 중기부창업중심대학(신규0.1조원), 과기부AI중심대학(0.1→0.2조원) ② (고등·영유아) 교육부미래인재성장자금(신규0.7조원), 교육부교사아동비율 개선(0.3→0.5조원) 교육부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신규0.2조원), 교육부인턴학기제(신규0.5조원) ※ (여유자금) 2.5조원
총괄 계정 (109.4조원)	○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5조원 ※ (여유자금) 96.9조원 + α^* * '26년 세입재추계(26.9월) 이후 변경된 '26년 내국세 수입 증가분

나. 국내외 유사 재정제도 현황

(1) 국내 사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정부 내 자금조정 및 지역·미래투자 등 여러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재정제도와 일부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하여 정부 내부의 자금수급을 조정하고 필요한 회계·기금 등에 예탁하는 등 국가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 역시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금조정 기능의 일부가 유사함.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도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용도로 하고 있고, 장기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례도 유사하게 두고 있어 사업범위 및 집행방식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계정과 세입 감소 등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이는 자금조정 기능과 재정안정화 기능을 함께 수행하

면서도 각 기능을 계정별로 구분한 사례라는 점에서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의 기능설계와 비교할 수 있음.

[국내 유사 재정제도와 비교]

구분	주요 기능	미래대응기금과의 유사성	주요 차이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 여유자금 통합관리	예수·예탁, 자금조정	재정안정화 및 미래투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능은 제한적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 균형발전 지원	지방계정 사업과 유사	미래대응기금은 별도 기금계정으로 운용되고 총괄계정과 자금거래 가능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자금통합· 재정안정화	자금조정· 세수변동 대응	지방자치단체 단위 제도로써 국가 차원의 미래투자 기능은 없음

이와 같이 미래대응기금의 개별 기능과 유사한 국내 재정제도는 존재하나, 재정안정화, 정부 내 자금조정 및 청년, 성장동력, 지역, 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미래투자를 하나의 기금에서 함께 수행하는 동일한 구조의 제도는 기존 재정체계에서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은 기존 제도와 동일한 성격이라기보다 여러 재정제도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음.

(2) 해외 사례6)

해외에서는 재정수입의 변동에 대응하거나 비경상적 재원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전략적 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금 및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다만, 각 기금은 재원의 성격과 운용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6) 하나증권, 「[2027년 예산안] 재정수지 개선의 역설」, 『Global Macro Strategy』, 2026. 9. 4. 참고

칠레의 경제·사회안정화기금(Economic and Social Stabilization Fund, ESSF)은 2007년 기존의 구리안정화기금(Copper Stabilization Fund)⁷⁾을 대체하면서 그 자산 대부분을 승계하여 설립되었음. ESSF는 경제주기의 급격한 변화나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여 기간 간 공공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재정적자 보전, 연금준비기금에 대한 출연 및 공공부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재정책임법」에 따라 매년 실제 재정흑자에서 연금준비기금 및 중앙은행에 대한 출연, 공공부채 상환 등을 조정한 후 발생하는 양(+)⁸⁾의 잔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정여력이 있는 시기의 재원을 축적하였다가 경기변동 등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 글로벌(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GPFG)은 정부연기금의 일부로서, 향후 증가하는 공적연금 지출에 대비한 정부저축을 지원하고 정부의 석유수입을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그 혜택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GPFG는 국가의 석유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하며, 비석유 부문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정부 예산으로 이전하고 있음. 또한 재무부가 투자범위와 위험관리 등에 관

7) 구리안정화기금은 국제 구리가격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ESSF는 이러한 안정화 기능을 경제주기 전반과 재정수지 변동에 대응하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확대한 사례로 볼 수 있음.

8) 칠레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of Chile), “Economic and Social Stabilization Fund (ESSF)”, <https://www.hacienda.cl/english/work-areas/international-finance/sovereign-wealth-funds/economic-and-social-stabilization-fund> (최종검색일: 2026. 9. 11.).

한 기준을 정하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이에 따라 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음⁹⁾. 이는 단기적인 세수변동 대응보다는 석유수입의 장기적 관리와 세대 간 배분에 중점을 둔 사례로 볼 수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 PIF)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로서, 초기에는 사우디 경제의 기반 형성에 중요한 기업의 설립과 국가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지원하였음. 2015년 제도개편을 통해 감독체계가 재무부에서 경제개발위원회(CEDA)로 이관되면서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이후 Vision 2030¹⁰⁾의 핵심 추진주체로서 국내경제 발전, 경제구조 다각화, 전략사업 지원 및 해외자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¹¹⁾. 이는 재정수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화기금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전략투자적 성격이 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종합하면, 칠레 ESSF는 경기·재정변동에 대한 안정화 기능, 노르웨이 GPF는 특정 재원의 장기관리 및 세대 간 배분 기능, 사우디아라비아 PIF는 국가전략에 따른 투자기능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음. 이에 비해 제정안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와 전략투자 기능을 하나의 기금에서 함께 수행하는 혼합형 구조라는 특징이 있음.

9) 노르웨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The Government Pension Fund”, <https://www.regjeringen.no/en/dep/fin/about-the-ministry/subordinateagencies/the-government-pension-fund-/id270410/> (최종검색일: 2026. 9. 11.).

10) Vision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수립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PIF는 전략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11) Public Investment Fund, Public Investment Fund Program 2021 - 2025, pp. 10 - 11.

[해외 주요 재정안정화기금 및 국부펀드 사례 비교]

구분	칠레 ESSF	노르웨이 GPF	사우디아라비아 PIF
성격	재정안정화기금	저축형 국부펀드	전략투자형 국부펀드
주요재원	재정흑자 및 기존 구리안정화기금 승계재원	국가의 석유·가스 관련 수입 및 투자수익	정부 자본출자·정부자산 이전·투자수익·차입 등
주요목적	경기·세입변동 완화, 재정적자 및 부채 대응	석유수입의 장기관리 및 세대 간 배분	경제다각화·전략산업 육성·지속가능한 수익
운용	재정안정화 목적의 자금운용	해외 주식·채권 중심의 장기 분산투자	전략적·적극적 투자
미래대응 기금과 유사성	재정안정화 기능	재원의 장기적 축적·관리	성장동력·전략투자

3. 총괄적 검토

가. 추가·초과세수를 활용한 기금 설치의 적정성

제정안은 세수 호조기에 발생하는 추가·초과세수 등을 미래대응 기금에 적립하여 세수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미래대응투자에 활용하려는 것임.

최근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 및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세수여력을 단년도 소비성 지출에 모두 활용하기보다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재정안정화 및 미래 성장기반 확충에 활용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인공지능·국가전략기술 등 첨단분야는 초기 투자위험이 크고 민간의 투자만으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 재정을 활용한 선도적 투자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음.

다만, 추가·초과세수는 미래투자 외에도 국고채 순발행 규모를 축소 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채무 및 이자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실제 국가채무는 2015년 591.5조원에서 2026년 1413.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국고채 이자비용도 2015년 17.7조원에서 2026년 34.4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도별 국가채무·국고채 규모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조원)

구분	국가채무	국가채무이자	국고채(누적)	국고채(발행)	국고채 이자
2015	591.5	19.7	485.1	109.3	17.7
2016	626.9	19.7	516.9	101.1	17.6
2017	660.2	18.8	546.7	100.8	16.9
2018	680.5	18.7	567.0	97.4	16.9
2019	723.2	18.0	611.5	101.7	16.3
2020	846.6	18.7	726.8	174.5	16.8
2021	970.7	19.2	843.7	186.3	17.7
2022	1067.4	21.1	937.5	168.6	19.4
2023	1126.8	24.7	998.0	165.7	23.1
2024	1175.0	28.3	1047.9	158.4	26.8
2025	1305.2	31.7	1161.3	227.4	30.3
2026(전망)	1413.7	36.5	1269.8	225.7	34.4
2027(전망)	1519.8	42.8	1366.0	222.8	40.4

* 주: 국고채(발행)은 차환발행을 포함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 2026, p.116;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6, p.174-188

한편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가채무를 감축하고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및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세수를 채무상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²⁾과, 국채시장의 유동성과 기준금리 형성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국채발행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기보다는 시장 유지에 필요한 적정 발행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³⁾이 있는 상황임.

12)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추가세수가 확인되는 경우 우선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여 국가채무를 실제로 상환하고, 이후 실현된 흑자를 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김우철, 「2027년 예산안 검토: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긴급진단토론회』 자료집, 2026. 9. 10.)

따라서 추가적인 세수여력을 미래투자와 재정건전화에 각각 어느 정도 배분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미래투자의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 제고 효과, 국가채무 및 이자부담의 증가 추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 12.5조원을 신규 국채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는 등 미래투자와 재정건전화를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임¹⁴⁾.

13)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채가 채권시장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기준금리 형성 및 시장 유동성을 담당하는 핵심 금융자산이라는 점에서 세수 증가를 이유로 국채발행량을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채시장 유지에 필요한 적정 발행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상민,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토론문,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14)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무디스는 2026년 9월 한국 정부의 '27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하여 재정건전성과 성장과의 균형 추구한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설명임.

나. 기금재원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안정화 기능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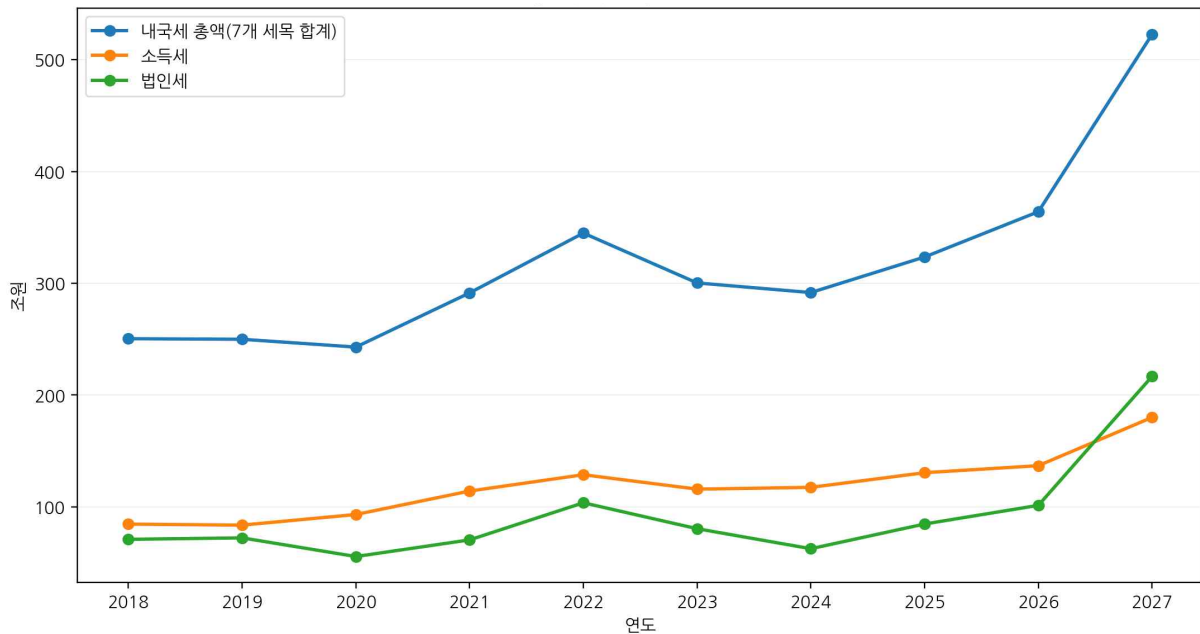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호조기에 재원을 적립하였다가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이를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재정안정화 기능과 함께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미래투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경우 세입 감소기에 급격한 지출조정이나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초과세수 등은 경기 및 주요 산업의 업황 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금에서 수행하는 일부 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단기간에 축소하기 어려운 계속적·반복적 지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시점에는 기존 사업의 재원조달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립재원의 확보가 서로 경합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내국세 세입을 구성하는 세목별 추이를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 법인세는 기업실적 및 경기여건 등에 따라 연도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6조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감소한 후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216.7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처럼 기금재원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가 특정 세목의 경기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은 추가세수에 의존하는 기금재원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내국세 총액 및 소득세·법인세 추이]



* 주: 내국세 총액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의 합계임.
2018~2025년은 결산액, 2026년은 추가경정예산, 2027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 자료: 2018~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2025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재정」, 2026~2027년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

[내국세 세입 주요 세목별 추이]

(단위: 조원)

구분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증권 거래세	인지세	계
2018	84.5	70.9	7.4	70.0	10.5	6.2	0.9	250.4
2019	83.6	72.2	8.3	70.8	9.7	4.5	0.8	249.9
2020	93.1	55.5	10.4	64.9	9.2	8.8	1.0	242.9
2021	114.1	70.4	15.0	71.2	9.4	10.3	1.0	291.4
2022	128.7	103.6	14.6	81.6	9.3	6.3	0.8	344.9
2023	115.8	80.4	14.6	73.8	8.8	6.1	0.8	300.3
2024	117.4	62.5	15.3	82.2	8.7	4.8	0.8	291.7
2025	130.5	84.6	16.5	79.2	8.5	3.4	0.8	323.5
2026	136.8	101.3	17.0	86.6	8.9	10.6	0.8	362.0
2027	180.0	216.7	15.6	91.4	8.5	10.7	0.8	523.7

* 주: 2018~2025년은 결산액, 2026년은 추가경정예산, 2027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 자료: 2018~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2025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재정」, 2026~2027년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

이와 관련하여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투자 기능 간 관계 및 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시적인 사업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세수 호조기에 확보한 재원을 적립하였다가 세입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재정안정화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¹⁵⁾, 아일랜드의 미래아일랜드기금(FIF)과 같이 장기 적립기금과 경기·재정충격 대응을 위한 안정화기금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⁶⁾, 직접적인 사업수행 기능을 축소하고 자금의 적립·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계정성 기금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⁷⁾ 등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향후 추가세수의 유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금재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적인 재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기금재원이 감소한 이후에도 계속사업의 지출수요가 유지될 경우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 등 다른 재

15)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대규모로 이전한 또 하나의 종합 사업기금이 되기보다는, 재원의 시기 간 배분을 조정하는 재정안정화 기능과 한 시적·대규모 미래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특히 총괄계정의 재정안정화 기능은 미래대응기금의 고유 목적이 명확하여 유지 필요성이 높은 반면, 기존의 상시사업은 일반회계와 기존 재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상민,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토론문,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16)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세수 호조기의 재원을 적립하여 세수 악화기에 활용하는 재정 평탄화 방식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접근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일랜드가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장기적인 세대 간 자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아일랜드기금(FIF)과 경기·재정충격에 대응하는 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을 별도로 설치한 사례를 제시함. 이는 장기적인 자산축적과 중기적인 재정안정화처럼 운용 목적과 시간적 범위가 서로 다른 기능을 구분하여 설계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는 의견임. (김학수, 「종합토론문」,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17)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안정화에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성 기금보다 자금을 적립·관리하고 필요시 예산 등으로 이전하는 계정성 기금이 보다 적합하다고 설명함. 또한 미래대응기금의 청년·지방·교육·인재계정 등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기금보다 일반적인 예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필요성과 당위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사업성 기금 성격을 축소하는 대신 계정성 기금 성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김태일, 「미래대응기금, 계정성이나 사업성이나」, 『경향신문』, 2026년 9월 10일자)

원으로 부담이 이전되고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래대응투자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지출규모는 원칙적으로 중·장기 추가세수 전망에 따른 연평균 재원유입액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초과하는 지출이 반복될 경우 적립금 소진과 기금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제정안은 재정안정화 목적의 적립·유보 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적립재원의 사용요건·한도, 미래대응투자와 재정안정화 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재원 전망, 계속사업의 향후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안정화 목적의 적립금 수준, 4개 사업계정을 통한 지출규모 등을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임.

다. 기존 재정체계와의 중복 가능성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 일반회계 또는 기존 특별회계·기금보다 별도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나의 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부처·회계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제정안에 따른 총괄계정 및 각 사업계정의 주요 기능·용도와 관련성이 있거나 기능 중첩 가능성이 있는 기존 재정체계는 다음과 같음.

[미래대응기금 내 계정의 법률상 용도 및 기존 재정체계와 비교]

계정	법률상 용도	중첩 가능성 있는 회계/기금
총괄계정	다른 회계·기금 및 기금 내 계정 간 전출·예탁,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공공자금관리기금
청년계정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성장동력계정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일반회계의 산업·과학기술 R&D 사업 등
지방계정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교육·인재 계정	영유아 보육·교육, 고등·평생교육, 첨단산업 인재양성·우수인재 유치 등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영유아 특별회계 등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괄계정의 자금조정 기능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각 사업계정 역시 기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 정책분야와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음. 다만, 정책분야가 중첩된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재정체계와 비교하여 별도 기금으로 수행할 경우 어떠한 추가적인 정책효과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할 것임.

특히 제정안은 청년계정의 경우 일자리·주거·자산형성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등 청년 지원 전반을, 지방계정은 지역산업·정주여건·농어촌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 인재양성 및 국가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사업까지 폭넓게 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계정별로 대통령령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정책분야의 상당수 재정사업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임.

이에 따라 기존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대폭적인 투자 확대 계획이 없이 재원만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정책적 실익이 제한될 수 있고, 동일·유사 사업이 여러 회계·기금에 분산되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음.

실제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존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서 수행되던 사업들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편성되어 있어, 개별 사업의 성격과 추진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재원만 변경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¹⁸⁾.

또한, 제정안은 개별 사업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미래대응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기금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사업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속적 이전지출이나 일반적인 경상지원 사업까지 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한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① 인적·물적 자본형성에 투자하는 사업(New-Capital), ②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Enterprising), ③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fleXible), ④ 투자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업(Timely)이라는 ‘NEXT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¹⁹⁾. 이러한 기준은 미래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제정안에는 이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선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대규모 이관이나 상시적 재정사업까지 폭넓게 기금에서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²⁰⁾²¹⁾. 특히 재

18)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상당수 사업의 사업내용·지원대상·지원규모 등이 전면 개편되고 그 규모가 14.2조원에서 24.6조원으로 약 73% 대폭 확대되었다는 설명임.

19)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적립하여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재정안정화에 활용합니다」, 보도설명자료, 2026. 9. 11.

20)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대규모로 미래대응기금에 이관하기보다 재정안정화 기능과 한시적·대규모 미래투자에 기금의 기능을 집중하고, 기존 상시사업은 일반회계 등 기존 재정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기존 사업에는 예산편성·집행·결산·성과평가 등 관리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기금이 사업 자체를 이관받기보다 필요한 재원을 기존 회계로 이전하여 현행 관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음. (이상민,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토론문,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21)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기존 일반회계 사업 61건, 18.3조원이 이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기존사업의 단순 이관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 (김우철, 「2027년 예산안 검토: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162조 정권쌈짓돈, 긴급진단토론회』 자료집, 2026. 9. 9.)

정안정화 기능과 한시적·대규모 투자 등 별도 기금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기금의 기능을 집중하고, 기존 회계·기금 또는 유사 정책수단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한시성·자본형성·추가성·성과 연계 등 기금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²²⁾²³⁾.

따라서 별도 기금 설치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괄계정과 기존 자금조정기금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사업계정과 기존 회계·기금 간 역할분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잠재성장률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의 관련성, 자본·인적자본 형성 효과, 중·장기 또는 집중투자의 필요성, 민간투자 유발효과 및 기존 재정체제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미래대응투자 사업의 선정기준과 중점 지원 사업유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2)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은 총괄계정의 재정안정화 기능은 재원과 목적의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투자계정은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요건의 충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이에 재정안정화 기능과 특수목적성이 인정되는 투자사업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그 밖의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박정흠,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토론문,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23)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성 총괄계정과 4대 용처의 사업성 계정이 혼재된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단순화하고, 각 계정의 사업이 예산사업·국민성장펀드·국부펀드 등 기존 정책수단과 중복되는지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이에 4개 사업계정의 정책성 지출은 일반·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입하고, 재정안정화 기능만 기금에 남기는 방안을 제시함.(김학수, 「종합토론문」,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라.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동 제정안과 함께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종전 법정교부 방식으로 배분되던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구분	현행	개정안	미래대응기금과 연계
지방교부세	내국세 × 19.24%	(내국세 - 미래대응기금 전출금) × 19.24%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따라 교부세 모수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 20.79%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GDP 및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연계하여 교육·인재계정에 자원 전입

이러한 방식은 기존 법정교부 방식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역별·교육분야별 정책수요와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지방교부세 등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일부가 중앙정부가 사업대상과 지원방식을 결정하는 기금사업 재원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및 안정성·예측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계에서는 기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교육단계별 자원배분 기준과 안정적인 자원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기금운용 과정에 교육현장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²⁴⁾이 제시되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계정의 운용 및 재원배분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²⁵⁾ 한편,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지방계정이 확대되더라도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재원 감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²⁶⁾.

2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부금 산정방식,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및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교부금 제도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투입되는 만큼,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관련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용도 및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공동 입장」, 2026. 8. 21.)

그 밖에도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①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으로 종전 시·도교육청의 법정 일반재원이 될 수 있었던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의 목적성 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독립성·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고,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다시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 또한 교육·인재계정에 지방교육재정과 연계된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계의 참여를 법률상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②부산교사노동조합과 대구교사노동조합도 학령인구 감소에도 인건비·학교운영비 등 고정적 지출과 AI·디지털 전환,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교부금 축소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역 간 교육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당사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③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교육·인재계정에 영유아 보육·교육을 포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등 기존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 보육·교육 재원은 기존 교육재정을 대체하지 않는 추가재원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또한 분야별 재원배분 기준과 최소지원 규모를 마련하고 기금운용 과정에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5)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지역이 직접 미래를 계획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치재정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 「박찬대 협의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2026. 8. 26.) 한편, 대구광역시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몫의 재원을 우선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계정이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용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대구광역시의회, 「지방자치 혼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 2026. 9. 16.).

26) 참여연대와 전국 18개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이 편성되더라도 기금의 사용처를 중앙정부가 결정하므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

한편 구체적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변경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률안의 심사결과와 지방·교육계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제정안의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 소멸 위기 외면하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하라」, 2026. 9. 8.)

마. 다부처 기금 설치가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체계에 미치는 영향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총괄하여 관리·운용하면서 다수 중앙관서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의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다부처 기금으로 설계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는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하나의 기금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미래대응기금 역시 매년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되는 만큼, 기금 전체가 국회의 재정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다만, 기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수행되던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될 경우, 해당 사업의 정책과 근거법률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와 사업재원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아동수당법」에 근거한 아동기본수당 사업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편성되어 있는데, 제도와 근거법률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반면 사업은 미래대응기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정책심사와 재정심사가 분리되는 구조가 나타남.

특히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은 16개 중앙관서의 129개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어 이러한 심사 분리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의 중앙관서별 사업 편성 현황]

중앙관서	세부사업수	2027년 예산액		소관 상임위
		금액(억원)	비율(%)	
행안부	5	85,902	18.9	행안위
과기정통부	38	83,151	18.3	과방위
교육부	13	49,315	10.9	교육위
국토부	10	42,919	9.5	국토위
복지부	3	36,631	8.1	복지위
금융위	7	35,386	7.8	정무위
기후부	14	26,450	5.8	기후노동위
노동부	5	25,667	5.7	기후노동위
중기부	9	18,188	4.0	산자중기위
농식품부	3	11,921	2.6	농해수위
문체부	3	9,843	2.2	문체위
재경부	4	9,500	2.1	재경위
산업부	7	9,118	2.0	산자중기위
우주청	5	7,465	1.6	과방위
성평등부	1	1,663	0.4	성평등위
해수부	2	507	0.1	농해수위
총계	129	453,626	100	

*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6. 9. 참고 후 작성

이러한 현상은 기존 다부처 기금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복권기금·기후대응기금 등 일부 다부처 기금의 경우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 외에 개별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음²⁷⁾.

다만, 이러한 방식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직접적인 예비심사와는

27) 예를 들어, 2026년 정기회에서 2027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직접 심사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사업에 관하여 ‘의견제시의 건’으로 심사·의결하였음.

차이가 있고,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구속하지 않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 일정의 차이로 의견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개별 사업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조정·반영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음.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사업비 규모가 45.4조원으로, 복권기금(3.6조원)의 약 13배, 기후대응기금(7.6조원)의 약 6배에 이르고 사업이 다양한 중앙관서에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예를 들어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이 전체 정책사업의 65.9%를 차지하는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사업 수가 가장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중이 29.5%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10.9%, 교육부 10.1% 등으로 여러 중앙관서에 분산되어 있음.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은 기존 다부처 기금에 비해 관련 상임위원회의 범위가 넓고 심사대상 재정규모도 큰 만큼, 기존의 의견제시 방식만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의 전문적 심사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가 여러 부처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 정책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제도효과와 재정소요를 연계하여 심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주요 다부처 기금의 규모 및 세부사업 현황(2027년 기준)]

구분	기금규모	소관부처 (기관)	세부사업 수	비고
미래대응 기금	45.4조원	16개	129개 (과기정통부 38개(29.5%), 기후부 14개(10.9%), 교육부 13개(10.1%) 등)	4개 사업계정 사업비 기준
복권기금	3.6조원	16개	27개 (복지부 5개(18.5%), 문화부 3개(11.1%), 보훈부 3개(11.1%) 등)	법정배분사업(16개) + 공익사업(11개)기준
기후대응 기금	7.6조원	16개	179개 (기후부 84개(46.9%), 산업부 34개(19.0%) 등)	정책사업 기준 (재정거래성 항목 제외)

- * 주1: 미래대응기금은 4개 사업계정(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의 사업비 및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하여 산정함
- * 주2: 복권기금은 다부처사업 기금의 비교를 위해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기금규모·소관부처·세부사업 수를 산정함
- * 주3: 기후대응기금의 세부사업 수는 일반회계 전출,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등 재정거래성 항목을 제외하여 산정함.
- *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6. 9. 참고 후 작성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의 다부처적 특성에 따른 심사 분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정의무지출이나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는 사업 등 정책심사와 재정심사의 연계 필요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편성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는 한편,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개별 정책 소관 상임위원회가 특정 사업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이관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²⁸⁾.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는 교육·인재계정이 교육분야 사업에 사용되는 점과 교육 목적의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국회 심사체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재계정의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주요항목 변경 시 교육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남수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국회 교육위원회, 2026. 9. 16., p.22)

4. 조문별 검토

가. 미래대응투자의 정의 및 기금 재원 산정기준의 적정성 (안 제2조)

제정안
○ 정의 (§2) - 미래대응투자(1호): 국가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청년·성장동력·지역발전·교육·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 내국세 세입(2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담배 제외), 인지세, 증권거래세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 ※ 관계 가산세 및 전년도 이전 징수결정분 중 당해연도 징수액 포함 - 내국세 세입 예산액(3호):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예산 중 내국세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 - 내국세 세입 추세치(4호): 과거 내국세 세입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특정 회계연도의 추산액 ※ 산식: $2\text{년 전 내국세 세입 결산액} \times (1 + \text{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2$ - 추가세수(5호):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 - 내국세 세입 추세치 - 초과세수(6호): 세입 재추계액(추경 확정 시 변경된 세입예산액) 중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정안 제2조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산정 및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래대응투자, 내국세 세입 및 세입예산액, 내국세 세입 추세치,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특히 내국세 세입 추세치는 과거 내국세 세입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추가세수는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과 추세치의 차액,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액 또는 추경으로 변경된 세입예산액이 당초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1) 미래대응투자의 정의 및 범위

제정안 제2조제1호는 “미래대응투자”를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역발전 및 교육·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기능과 함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과제에 투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지출대상을 잠재성장률 제고와 연계하여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음.

다만, 청년, 성장동력, 지역발전, 교육·인재 육성 등은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어떠한 사업이 실제로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미래대응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제정안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복지·고용·지역개발·교육사업 등도 폭넓게 미래대응투자에 포함될 수 있고, 각 사업계정의 사업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용도규정과 결합할 경우 기존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광범위하게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음.

(2) 내국세 세입 추세치 산정방식의 적정성

제정안 제2조제4호는 특정 회계연도의 2년 전 내국세 세입 결산액에, 해당 금액과 12년 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²⁹⁾.

29) 여기서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각 회계연도의 전년 대비 내국세 세입 증감률을 단순 산술평균한 값이 아니라, 기준기간의 시작연도와 종료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을 비교하여 해당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연간 증감률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특정 회계연도를 t년이라고 할 경우, t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begin{aligned} & - \text{연평균 증가율}(B) = [(t-2\text{년 내국세 세입 결산액} \div t-12\text{년 내국세 세입 결산액})^{1/10}] - 1 \\ & - t\text{년 내국세 세입 추세치} = t-2\text{년 내국세 세입 결산액} \times (1+B)^2 \end{aligned}$$

예를 들어, 2027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산출한다고 가정할 때, 2015회계연도 내국세 세입 결산액이 250조원이고 2025회계연도 결산액이 370조원인 경우,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370 \div 250)^{1/10} - 1] \times 100 \approx 4.0\%$ 임. 이에 따라 2027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는 $370\text{조원} \times (1+0.040)^2 \approx 400.2\text{조원}$ 으로 산출됨.

[제정안에 따른 내국세 세입 추세치 산식]

$$\text{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 = A \times (1 + B)^2$$

A: 특정 회계연도의 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B: 특정 회계연도의 1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대비 A의 연평균 증가율

이는 정부가 매년 편성하는 세입예산액만을 기준으로 기금 재원규모를 정하지 않고, 과거의 장기적인 세입 흐름을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선을 설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내국세 세입 추세치는 추가세수의 규모를 직접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산정방식의 객관성과 안정성이 중요함. 제정안의 산식은 명확하나, 특정 두 시점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평균 증가율이 장기적인 내국세 세입 추세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특히 기준기간의 시작연도 또는 종료연도에 대규모 초과세수나 세수결손 등 이례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연평균 증가율과 추세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준기간이나 기준시점을 달리 설정할 경우 추세치와 이에 따른 추가세수 규모도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세율 및 과세표준 변경 등 세제개편이나 경제구조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과거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기조적인 세입 흐름과 추세치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세 세입 추세치 산식에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이상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

전과³⁰⁾ 과거 세수 증가율을 단순 외삽하는 방식보다 잠재GDP와 세수 탄성치 등을 활용하여 경제의 기초적 성장과 세수 간 관계를 반영하는 구조적 세수 추정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³¹⁾이 제시된 바 있음.

(3) 추가세수 산정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제정안 제2조제5호는 “추가세수”를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에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추가세수는 실제로 추가 징수된 세수가 아니라,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당초 세입예산액이 장기 추세치를 상회하는 부분을 재정여력으로 보아 미래 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임.

이와 같은 방식은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 그 증가분의 일부를 단년도 지출에 모두 활용하지 않고 미리 적립함으로써 향후 재정안정화 및 미래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추가세수의 산정기준을 실제 징수실적이 아닌 세입예산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추가세수는 세입예산액과 추세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산정되므로,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편성한 이후 실제 세수가 세입예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되는 세입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KDI),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문

31) 김우철, 「2027년 예산안 검토: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 「미래대응기금? 미래저당기금! 긴급진단토론회」 자료집, 2026. 9. 10.

최근 세입예산액과 실제 세수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세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예산액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추가세수를 미리 산정·적립할 경우, 실제 세수가 예산에 미달하면 기금에 재원을 전입하면서도 세입결손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³²⁾.

다만, 추가세수를 결산액과 추세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결산액이 다음 연도에 확정되어 해당 연도 중 재원을 활용하기 어렵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추가세수를 산정하더라도 최근 세수 실적과 중·장기 세입전망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지출규모를 중·장기 추가세수 전망에 따른 연평균 재원유입액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초과세수 산정방식 및 세입추계와의 관계

제정안 제2조제6호는 “초과세수”를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추계 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경

32) 박정흠,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KDI)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우에는 이에 따라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초과세수는 회계연도 중 새롭게 확인된 세입증가분을 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산정되는 추가세수보다 최근의 세입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초과세수의 기금 전출이 일반회계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재추계액과 실제 징수실적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률안 관련 조문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대응투자”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역 발전, 교육·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내국세 세입”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 중 다음 각 목의 수입(관계되는 가산세 수입 및 해당 회계연도 전에 징수가 결정되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된 수입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담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바. 인지세
사. 증권거래세

제정안

3. “내국세 세입 예산액”이란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예산 중 내국세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내국세 세입 추세치”란 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규모를 과거 추세에 따라 추산한 금액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text{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 = A \times (1 + B)^2$$

A: 특정 회계연도의 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B: 특정 회계연도의 1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대비 A의 연평균 증가율

5. “추가세수”란 특정 회계연도의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국회가确定的한 그 회계연도의 최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뺀 금액을 말한다.
6. “초과세수”란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 예산(재추계 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确定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말한다) 중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총괄계정의 기능 및 계정·회계·기금 간 자금거래의 적정성
(안 제5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정안
○ 총괄계정의 재원 및 자금조정 기능 (§5, §10~§12) - 재원 (§5①): 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 다른 회계·기금 및 기금 내 계정의 전입금·예수금, 예탁금 원리금, 사업 회수자금, 운용수익금 등 - 용도 (§5②): 다른 회계·기금 및 기금 내 계정에 대한 전출·예탁,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금 관리·운용비 등 - 여유자금 예탁 (§10): 특별회계·기금은 개별 설치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총괄계정에 예탁 가능 - 예수조건 (§11): 예수기간 1개월 이상, 시장금리·운용수익률·기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심의회가 이자율 결정 - 조기상환 (§12):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예탁기간 전 상환 가능(15일 전 요청)

제정안은 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총괄계정의 재원으로 하고, 이를 다른 회계·기금 및 미래 대응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전출·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계·기금 및 계정의 여유자금을 총괄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총괄계정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각 사업계정 등에 배분하는 기능과 함께,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하여 다시 예탁·전출하는 자금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2027년도 총괄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중심으로 162조 2,998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4개 사업계정에 52조 8,625억원을 전출하고, 국채 신규발행 규모 축소를 위하여 일반회계에 12조 5,000억원을 전출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조원을 예탁하는 한편, 잔여재원 95조 8,614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임.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단위: 억원)

구분	주요항목	금액	주요기능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1,584,720	추가세수 등을 총괄계정에 적립
	특별회계 전입금	12,427	다른 회계의 재원을 총괄계정으로 전입
	특별회계 예수금	25,645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총괄계정에서 예수
	기금예탁이자수입	205	예탁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수입 합계	1,622,998	
지출	청년계정 전출	133,296	청년계정 사업재원 배분
	성장동력계정 전출	141,638	성장동력계정 사업재원 배분
	지방계정 전출	152,662	지방계정 사업재원 및 여유자금 배분
	교육·인재계정 전출	101,029	교육·인재계정 사업재원 및 여유자금 배분
	일반회계 전출	125,000	국채 신규발행 규모 축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0,000	다른 기금과의 자금조정
	특별회계 예수이자 상환	526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
	기금운영비	233	기금 관리·운영
	여유자금 운용	958,614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등을 통한 잔여재원 운용
	지출 합계	1,622,998	

*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6. 9. 참고 후 작성

총괄계정을 통하여 추가세수·초과세수 등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세입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에 활용하고, 각 사업계정의 재정수요에 따라 재원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정안정화 재원의 적립·유보 및 사업계정 배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제정안은 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 등을 총괄계정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 중 재정안정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을 유보하도록 하는 기준이나 사업계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세수 호조기에 확보된 재원이 사업계정 등에 우선 배분될 경우, 세입여건이 악화된 시점에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총괄계정에 유보하여야 할 최소 규모 또는 적립목표, 인출요건 및 사업계정 배분기준 등 재정안정화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운영과정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등을 통해 총괄계정에 유보하여야 할 최소 규모 또는 적립목표 등 재정안정화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임.

둘째,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하는 기능이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 기금간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기간·이자율 및 기한 전 상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 여유자금의 예탁, 예수기간·이자율 및 기한 전 상환에 관한 제도와 유사한 구조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이미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능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예수·예탁 제도를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에 별도로 두는 경우 국가 차

원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기능이 복수의 기금으로 분산되고, 동일한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어느 기금에 예탁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불명확해질 수 있음.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예수·예탁 기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부여할 경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미래대응기금 간 대상자금, 운용목적 및 예탁기준 등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통상 단년도 회계의 수입지출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여유자금의 중장기 운용, 대규모 부족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중장기 시계에서 운영하여 대규모 추가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향후 세수결손 등 발생시 재정여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임.

[제정안상 총괄계정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조정 기능 비교]

구분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
근거법률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여유자금 예탁	제10조(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부터의 예탁) 특별회계 또는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 주체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미래기금 총괄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구분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재정경제부장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수조건	제11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총괄계정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총괄계정 예수금에 대해서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채·공채의 이자율 수준,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기금등의 특성 및 기금등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해당 총괄계정 예수금을 예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조기상환	제12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주체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

구분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
	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미래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셋째, 추가세수의 전입·전출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추가세수의 정의를 “특정 회계연도의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에서 그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이 내국세 세입 추세치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세수가 양(+)의 값으로, 작은 경우에는 음(-)의 값으로 산출될 수 있음.

추가세수가 양(+)의 값인 경우에는 안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되는 반면, 추가세수가 음(-)의 값인 경우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지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안 제5조제2항제1호는 기금의 용도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전출 근거에 해당하며, 추가세수가 음(-)으로 산출된 경우 그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추가세수가 음(-)의 값으로 산출된 경우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라면, 추가세수가 양(+)인 경우와 대응되도록 그 전출 여부와 규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안 관련 조문

제정안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가세수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초과세수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3.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4.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수금”이라 한다) 7.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8.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교육·인재계정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9.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10.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11. 총괄계정의 운용 수익금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의 예탁 3.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에의 예탁 5. 총괄계정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 7. 미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10조(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특별회계 또는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미래기금 총괄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11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총괄계정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총괄계정 예수금에 대해서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채·공채의 이자율 수준,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기금등의 특성 및 기금등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해당 총괄계정 예수금을 예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주체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미래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 청년계정 및 성장동력계정의 지원범위와 사업선정 기준
(안 제6조·제7조)

제정안
○ 청년계정 및 성장동력계정의 재원·용도 (§6·§7) - 재원: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각 계정 운용수익금 - 청년계정 용도: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 지원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성장동력계정 용도: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통사항: 총괄계정으로 전출 가능, 출연·보조·융자·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 가능

제정안은 청년계정에서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성장동력계정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각 계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연·보조·융자·출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상 청년계정 및 성장동력계정의 재원·용도·지원방식]

구분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재원	총괄계정 전입금, 계정 운용수익금	총괄계정 전입금, 계정 운용수익금
용도	①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 지원사업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지원사업 ③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①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사업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사업 ③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지원방식	출연·보조·융자·출자 등	출연·보조·융자·출자 등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청년계정은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청년 지원 주택 등 복지·자산형성·주거지원 사업의 비중이 큰 반면, 성장동력계정은 AI컴퓨팅 인프라, 국민성장펀드, 자율주행 실증 및 AI 데이터·전력망 등 첨단산업 관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청년계정 및 성장동력계정의 규모 및 주요사업]

구분	2027년 규모	세부사업	주요사업(사업비 상위 5개)
청년계정	13조 3,296억원	22개	① 아동기본수당 지급 2조 9,272억원 ② 청년미래적금 1조 7,011억원 ③ 청년 지원 주택 1조 4,000억원 ④ 창업사업화지원 9,542억원 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12억원
성장동력 계정	14조 1,638억원	52개	①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4조 2,752억원 ② 국민성장펀드 1조원 ③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8,415억원 ④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8,000억원 ⑤ S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5,969억원

*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6. 9. 참고 후 작성

청년계정과 성장동력계정을 별도의 사업계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청년 및 성장동력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각 계정의 용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서 수행되는 상당수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지원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다음의 사항은 검토가 필요함.

첫째, 청년계정의 지원대상과 청년정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청년계정의 용도를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혼인·출산, 생활·문화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지원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법률상 거의 모든 청년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임. 한편, 2027년도 편성사업에는 아동기본수당³³⁾, 우리아이자립펀드³⁴⁾ 등 청년 본인 외에 청년가구의 자녀 등을 직접적인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반면, 제정안은 안 제2조제1호에서 미래대응투자를 “국가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역발전, 교육·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각 계정의 용도를 규정할 때에는 “미래대응투자의 개념을 연관지어 규정하고 있지 않음.

미래대응기금이 추가·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국가발전 과제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청년 또는 청년가구를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청년의 인적자본 축적, 노동시장 참여, 창업·혁신역량 및 생산성 제고 등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과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33) 보건복지부 소관 계속사업으로,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존 아동수당을 확대·개편하여 아동의 성장과 양육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정부는 현행 월 10만~13만원 수준의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는 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으로 2조 9,27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미래대응기금(Ⅰ)」, 2026. 9.)

34) 우리아이자립펀드는 금융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으로, 출생아 명의의 장기 금융투자상품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성년기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정부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1,465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미래대응기금(Ⅰ)」, 2026. 9.

둘째, 성장동력계정의 고유한 기능과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성장동력계정의 용도로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을 예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음. 실제 편성사업도 AI·R&D뿐만 아니라 금융·출자, 전력·에너지, 산업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또한, 개별 세부분야별로도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음.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퍼지컬AI 등 기술개발, AIDC 등 인프라 구축, AI컴퓨팅 자원 지원 및 민간 AI 활용 지원 등 기술개발부터 인프라 구축, 활용 및 수요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³⁵⁾. 이에 따라 성장동력계정의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기존 일반 회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서 수행하던 사업의 이관이나 중복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성장동력계정은 기술혁신, 민간투자 유발, 산업구조 전환 및 생산성 향상 등 성장동력 확충 효과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존 회계·기금 및 유사 정책수단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5)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음.

구분	주요 예시사업	2027년 계획액
기술개발	퍼지컬AI 핵심기술개발	550억원
AI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조성	878억원
컴퓨팅 자원 지원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4조 2,752억원
기업 AI 활용지원	제조 암묵지 AI솔루션 개발·확산	2,900억원
AI 수요·이용 지원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2,500억원

종합하면, 미래대응기금이 추가·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국가발전 과제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혜대상이 청년·청년가구이거나 특정 기술·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기존 재정수단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고 잠재성장률 제고, 민간투자 유발, 산업구조 전환 및 생산성 향상 등 미래대응투자로서 별도의 재원 투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청년계정은 인적자본 축적, 노동시장 참여 및 생산성 제고 등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에 대한 기여도를, 성장동력계정은 기술혁신, 민간투자 유발, 산업구조 전환 및 생산성 향상 등 성장동력 확충 효과를 중심으로 기존 재정사업과의 차별성 및 별도 기금재원 투입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정별 사업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법률안 관련 조문

제정안
제6조(청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청년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청년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
② 청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지원 사업
3.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출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출연, 보조, 융자 및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7조(성장동력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성장동력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성장동력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

② 성장동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
3.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출연, 보조, 융자 및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 지방계정의 기능 및 기존 지역재정체계와의 관계
(안 제8조, 제17조·제18조)

제정안
○ 지방계정의 자원·용도 (§8) - 자원: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 다른 회계·기금 및 총괄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지방계정 운용수익금 - 용도: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지역발전 지원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금운용: 다른 회계·기금 또는 총괄계정에 예탁하거나 총괄계정으로 전출 가능, 총괄계정에서 예탁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 가능 - 지원방식: 출연·보조·융자·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 가능 ○ 지방계정의 이월 특례 (§17)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 가능 ○ 지방계정의 보조금 특례 (§18) - 지방계정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결정 변경, 집행관리·정산·반환 등 일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 -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은 유사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정수급·법령위반·이월 후 미집행 등의 경우에는 반환·제재 규정을 적용함.

제정안은 지방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지역발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계정의 자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 다른 회계·기금 등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및 계정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 지원 외에도 다른 회계·기금 또는 총괄계정에 대한 예탁·전출 등 자금운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지방계정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상 지

역균형발전 관련 재정지원 제도에서 적용되는 집행의 신축성 확보방식과 유사한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보조금 관리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을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³⁶⁾.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지방계정은 총 15조 2,662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업비는 10조 2,662억원, 여유자금은 5조 원임.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 2조 8,500억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 1조 5,005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조 1,658억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36)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이관사무 지원 6,5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정은 전체 규모 15.3조원 중 사업비 약 10.3조원, 여유자금 5조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운용계획]

구분	규모	주요내용
총규모	15조 2,662억원	총괄계정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지방계정 조성
사업비	10조 2,662억원	지역산업·인프라, 지방행정·공공기관 이전, 농어촌·지역경제 등을 지원하며, 2027년 사업비 기준 상위 5개 사업은 아래와 같음 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 ②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 (2조 8,500억원) ③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 (1조 5005억원) ④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조 1,658억원) 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 (6,500억원)
여유자금	5조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등을 통한 향후 지방 분야 재정수요 대응

*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6. 9. 참고 후 작성

미래대응기금 내에 지방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지역의 대규모·중장기 투자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고 단년도 예산제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지방계정의 고유한 기능과 기존 지역 관련 특별회계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지방계정의 사업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계정의 용도로 규정된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은 현행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사업영역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역자율계정을 통해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개선,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지원계정을 통해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 육성, 주요 성장거점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어, 제정안상 지방계정의 주요 용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법률상 주요 지원분야 비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제정안 §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성에 관한 특별법」)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개선, 물류·유통기반 등 산업기반 조성,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육성, 주요 성장거점 지원 * 법률 제78조제2항제1호나목·라목, 제79조제2항제1호·제2호·제7호 등
정주여건 개선	성장촉진지역·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도시환경 개선, 지방상수도 개발 등 * 법률 제78조제2항제1호가목
농어촌 지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농어촌·어촌·산촌 개발 등 * 법률 제78조제2항제1호가목4)·5)·6)·9)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통령령으로 제외되는 사업 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등 * 법률 제78조제2항제1호바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발전 지원사업	그 밖에 균형성장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 지원 * 법률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6호

또한, 농어촌 지원 분야에서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거점지역 육성, 투자유치·향토산업 지원 등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일부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³⁷⁾.

37) 현행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1호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를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제4호는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상하수도 정비·주택개량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거점지역 육성, 문화·복지시설 지원,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관광휴양자원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계정의 고유한 기능을 확보하고 기존 특별회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8조의 용도를 대규모·중장기 지역투자, 지역 성장기반 확충, 산업구조 전환 등 미래대응투자의 성격이 명확한 사업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방계정 보조사업 특례의 적용범위와 통제장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지방계정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을 허용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부조건 설정, 교부결정 변경·취소, 보조금액 확정·반환 및 제재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집행잔액을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적용되는 특례와 대체로 유사함. 다만, 제정안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하고 이월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달리 세입징수 상황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³⁸⁾.

따라서 특례의 적용범위를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 등 단년도 집행이

3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곤란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유사하게 이월 규모·기간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안 관련 조문

제정안
제8조(지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지방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지방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4. 총괄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5. 지방계정의 운용 수익금 ② 지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지역발전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발전 지원 사업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의 예탁 4. 총괄계정으로의 전출 5. 총괄계정에의 예탁 6.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출연, 보조, 융자 및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출사업의 이월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제정안

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미래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보조사업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해당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제18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지방계정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라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마.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용도 및 기존 교육재정과의 관계(안 제9조)

제정안
○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용도 (§9) - 재원: ① 해당 연도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과 내국세 세입 추세치 중 작은 금액의 20.79%에서 해당 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②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 다른 회계·기금 및 총괄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교육·인재계정 운용수익금 - 용도: 영유아 보육·교육, 고등·평생교육, 첨단산업 인재양성·우수인재 유치·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육성,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인재 지원사업 - 자금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 다른 회계·기금 또는 총괄계정에 예탁, 총괄계정에서 예탁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 가능 - 지원방식: 출연·보조·용자·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 가능

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고등·평생교육, 인재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교육·인재계정은 다른 사업계정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과 직접 연계된 별도의 재원구조를 두고 있음.³⁹⁾ 구체적으로 해당 연도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과 내국세 세입 추세치 중 작은 금액의 20.79%에서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2026년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정부 제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현행 ‘내국세 × 20.79%’ 중심의 정률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 및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 같은 법 제4조는 개편된 산식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의2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배분방식을 조정하고 있음.

20.79%에 연동되는 교부금 산정방식을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GDP 및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⁴⁰⁾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의 일부를 교육·인재계정에 전입하여 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활용하려는 것임.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인재계정은 총 10조 1,029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업비는 7조 6,029억원, 여유자금은 2조 5,000억원임. 주요 사업으로는 거점국립대 혁신지원 7,944억원,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6,469억원, 사립대학 인프라 개선 6,000억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5,51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교육·인재계정은 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기반 확충과 장학·인재양성, AI·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구조임.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운용계획]

구분	규모	주요내용
총규모	10조 1,02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 연계 일반회계 전입금, 총괄계정 전입금·예탁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
사업비	7조 6,029억원	대학·연구기관 지원, 장학·인재양성, AI·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을 실시하며, 2027년 사업비 기준 상위 5개 사업은 아래와 같음 ① 거점국립대 혁신지원 (7,944억원) ②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원) ③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6,469억원) ④ 사립대학 인프라 개선 (6,000억원) ⑤ 산학연협력 고도화 (5,519억원)
여유자금	2조 5,000억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등을 통한 향후 교육·인재 분야 재정수요 대응

*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6. 9. 참고 후 작성

40) 전년도 교부금의 금액 × (1 + 명목 국내총생산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 × [1 + (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 × 100분의 35]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교육·인재 분야에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교육·인재계정의 법정 사업범위가 기존 교육 관련 특별회계의 지원영역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어 역할분담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교육·인재계정의 용도로 영유아 보육·교육, 고등·평생교육, 첨단산업 인재양성,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육성,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사업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는 이미 영유아 보육·교육 특별회계가, 고등·평생교육 및 인재양성 분야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별도의 재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교육·인재계정의 법정 사업범위가 기존 특별회계의 주요 지원영역을 상당 부분 포괄하는 구조임.

이처럼 교육·인재계정의 용도가 광범위하게 규정될 경우 기존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재정체계가 분산되고 동일·유사 사업이 복수의 회계·기금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기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단순 이관하는 경우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계정 설치라기보다 재원조달 경로만 변경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교육·인재계정의 법정 사업범위는 미래대응투자의 성격이 명확한 중·장기 전략적 교육·인재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기존 교육 관련 재정수단과의 역할분담 및 사업선정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교육·인재계정과 기존 교육 관련 특별회계의 법정 지원대상 비교]

구분	미래대응기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근거 법률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영유아특별회계법
주요 분야	영유아 보육·교육 / 고등·평생교육 / 인재양성	고등·평생교육, 국가·지역 인재양성	영유아 보육·교육
주요 법정 용도	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② 고등·평생교육 지원 ③ 첨단산업 인재양성,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육성 ④ 국가정책적으로 시급 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인재 지원사업	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②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③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④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방 대학 육성	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 ② 어린이집 운영·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경비

둘째, 교육·인재계정의 목적에 비추어 초·중등교육 분야의 지원 가능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교육·인재계정의 용도로 영유아 교육·보육, 고등·평생교육 및 인재양성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에 관해서는 별도의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43개 세부사업 중에서도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영재양성

사업(4534-310)을 제외하면 초·중등교육을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⁴¹⁾).

다만, 제정안 제9조제2항제4호는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 사업”을 교육·인재계정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어 초·중등교육 사업이 법률상 전면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와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조성 방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과 연계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재원 연계만을 이유로 초·중등교육을 기금의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장기적으로 교육·인재계정은 재원의 출처보다는 미래대응투자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잠재성장률 제고와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AI·디지털 교육, 첨단산업 분야 진로교육 등 전략산업 인재의 조기 발굴·양성과 인적자본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초·중등교육 사업은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제정안의 교육·인재 계정의 수입 규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41)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10.1조원 중 교육부 소관 사업은 4조 9,315억원이며,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등·연구·인재(대학) 분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부 소관 사업 중 초·중등교육을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고 분석함. 다만 제정안 제9조제2항제4호에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교육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봄. (김용남, 「종합토론문」,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9조제1항제1호는 교육·인재계정의 재원 중 하나로 “해당 연도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과 내국세 세입 추세기 중 작은 금액의 20.79%에서 해당 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개정안과 함께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⁴²⁾에 따라 교부금 산정방식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던 것에서 전년도 교부금에서 명목 GDP와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것으로 수정된 점을 반영한 것임.

따라서 해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 양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처리 및 시행시기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26. 9. 3., 의안번호 제2221053호)은 2026. 9. 4.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동 개정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전년도 교부금액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 변동률 및 학령인구 변동률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 교부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안 관련 조문

제정안
제9조(교육·인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과 내국세 세입 추세기 중 작은 금액의 1만분의 2,079에서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4. 총괄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교육·인재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6. 교육·인재계정의 운용 수익금 ② 교육·인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사업 2. 고등·평생교육 지원 사업 3. 첨단산업 인재 양성,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 육성 사업 4.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교육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인재 지원 사업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에 따른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 7.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의 예탁 8. 총괄계정에의 예탁 9.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은 출연, 보조, 융자 및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바.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안 제13조)

제정안
○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 (§13) - 관리·운용 주체: 기획예산처장관 - 여유자금 운용방법 ① 금융기관 예치·신탁 ② 유가증권 매매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 자산운용 위탁: 여유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 가능 - 관리·운용사무 위임·위탁: 기금 관리·운용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가능 - 기타 사항: 미래대응기금 및 각 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정안 제13조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신탁,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유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재원이 일정 기간 적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유자금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여유자금의 위탁운용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13조제2항 후단은 여유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위탁운용기관의 범위나 자격요건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해당 규정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실제 운용을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여유자금 규모가 104.4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운용기관의 전문성과 위험관리 수준이 기금의 운용성과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위탁운용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탁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해지지 않도록 자산운용의 전문성, 재무건전성, 위험관리 역량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최소한 대통령령의 위임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안 관련 조문

제정안
제13조(미래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미래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그 밖에 미래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기금 또는 미래기금에 설치된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 절차(안 제14조)

제정안
○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 (§14) - 미래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 ① 제출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② 제출자: 중앙관서의 장 ③ 제출내용: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사용계획서 ④ 제출처: 기획예산처장관

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3월 31일까지 기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조정한 후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심의를 거치게 됨. 이후 정부 전체 예산안 및 다른 기금운용계획안과 연계하여 최종 조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됨.

참고로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사용계획서 제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국회 제출 및 확정에 이르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미래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편성·확정 절차]



미래대응기금은 다수 중앙관서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부처 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에 앞서 각 중앙관서의 사업수요를 별도의 사용계획서로 제출받도록 하는 것은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금 전체의 자원배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기금사용계획서가 사업선정 및 성과관리의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은 예산 및 기금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성과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제정안 제14조에 따라 개별 중앙관서가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기금사용계획서에 성과목표나 기존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

미래대응기금은 다수 중앙관서의 사업수요를 하나의 기금에서 비교·조정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이므로, 기획예산처장관이 기금사용계획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예상 성과 및 기존 사업의 성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기대효과를,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성과목표의 달성도나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사용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할 경우, 사업선정 단계와 이후 기금 전체의 성과관리를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상 성과관리제도와 중복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세부적인 성과항목을 모두 열거하기보다는, 기금사용계획서에 “사업의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법률안 관련 조문

제정안
제14조(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미래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기능 및 구성(안 제15조)

제정안
○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15) - 미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설치 ① 심의사항: 기금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결산, 예수·예탁금 이자율·기간, 자산운용지침 등 ②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 ③ 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④ 위원: - 당연직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위원 - 민간위원: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 고려하여 위촉.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제정안 제15조는 미래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 예수·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 자산운용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심의회는 위원장인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미래대응투자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미래대응기금은 다수 중앙관서의 사업과 재원을 하나의 기금에서 조정하면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다양한 정책분야를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관계 기관과 정책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원배분과 자산운용 등 성격이 서로 다른 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핵심 관계부처와 지방·교육재정 관계자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정부위원을 미래대응투자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참여 부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여러 정책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특히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은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제도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핵심 관계부처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의회와 교육계에서는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의 재원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및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또는 별도의 협의체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지방 및 교육현장의 의견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⁴³⁾.

참고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경우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지방·교육 관련 대표기구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입법례가 있음⁴⁴⁾⁴⁵⁾.

43) 대구광역시의회, 「지방자치 혼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 2026.9.14.;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공동 입장」, 2026.8.21.; 교사노동조합연맹,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의견서」, 2026.8.25.

4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 45) 참고로,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국가재정법」 제7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사례도 있음.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다양한 정책분야와 재정제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핵심 관계부처의 참여를 규정하는 한편,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견이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둘째, 민간위원의 위촉방식과 위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문성·다양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하면서 민간위원 전원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민간위원에게 요구되는 전문분야나 외부 추천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일반적인 기금운용심의회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다수 중앙관서의 사업과 대규모 재원을 하나의 기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에서 조정·배분하고, 심의회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재정·경제·금융·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청년·산업·지역·교육 등 기금의 주요 정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또한 청년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셋째, 관계부처의 범위와 민간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심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기획예산처 이외에 16개 중앙관서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제정안은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 사업과 연관된 주요 관계부처의 참여를 보장할 경우 현행 위원 정수 상한 내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함께 구성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핵심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법률안 관련 조문

제정안
제15조(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① 미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미래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괄계정 예수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총괄계정 예탁금, 지방계정 예탁금 및 교육·인재계정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미래기금의 미래대응투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미래대응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안 제16조)

제정안
○ 미래대응기금의 회계 및 결산 (§53 제2항) - 미래대응기금의 수입·지출 및 계정별 회계처리, 결산상 이익·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회계관직 지정: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기금출납공무원 임명 ② 계정별 구분회계 ③ 결산상 이익금: 전액 미래기금에 적립 ④ 결산상 손실금: 미래기금의 적립금으로 보전 ⑤ 그 밖의 회계·결산 사항: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각 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결산상 이익금은 전액 기금에 적립하고 결산상 손실금은 해당 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정별 구분회계는 각 계정의 재원 조성 및 지출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재원이 법률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또한 결산상 이익금의 적립 및 손실금의 보전 방식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다른 기금 관련 법률에서도 두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보임.⁴⁶⁾

46)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은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법률안 관련 조문

제정안
제16조(미래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미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미래기금의 각 계정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미래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전액을 미래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④ 미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48